

2026 신한대학교 제2대 감사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
일시: 2026. 3. 11. 18:30

장소: 행함관 3층 학생회의실 2

0. 성원점검

감사운영위원장		원채빈	
감사운영부위원장	이채은	간호대학	천서연
공과대학	김지원	디자인예술대학	강혜성
보건대학	배서현	태권도·체육대학	김태희

총원 7명, 재적 7명, 불참 0명

*불출석 빨강, 대리참석 노랑, 타회의 참석하여 불출석 하늘색으로 표기

I. 보고안건

1) 위원장단 보고

■ 공고 업로드

- 1. 1. (목) 취임사 업로드 완료함.
- 1. 2. (금), 2. 2. (월) 위원 모집 공고 업로드 완료함.
- 3. 2. (월) 동계방학 정기감사 시행 공고 업로드 완료함.

■ 위원회 구성 보고

- 감사운영위원장, 감사운영부위원장, 보건대학 감사운영위원, 단과대학 파견 임시 감사운영위원 4인으로 위원회 구성됨.

■ 위원회 설립 취지 및 감사 방향 보고

- 본 위원회는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재정 운용 감사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임.
-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사 및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짐.
- 이에 따라 모든 위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

- 감사 진행 시 예산 편성 절차, 집행 절차, 증빙 적정성, 재정 운용 적정성 기준으로 판단 요청드립니다.

■ 감사운영세칙 관련

-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시 감사운영위원 임기는 해당 단과대학 감사운영위원 모집 완료일까지로 함.
- 제10조에 따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.
-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구분별 각 1회, 총 4회 실시함.
- 제29조, 제30조에 따라 피감사 단위에서 1차 감사의 결과에 이의가 존재할 경우,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접수한 이후 72시간 이내에 감사운영위원회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 진행함.

■ 재정운용세칙 관련

- 제5조 제5항에 따라 예·결산안은 인준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.
- 제5조 제6항에 따라 예·결산안은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 공개해야 함.
-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동계방학 회계연도는 1. 1.부터 3. 2. 까지임.
-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예산안은 지출 내역 편성하여 심의의결받아야 함.
- 제11조 제6항에 따라 예비비는 총예산의 10% 이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.
- 제11조 제7항에 따라 예산 집행은 회계연도 종료 14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.
-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 종료 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학생회비로 귀속되며, 의결 기구 의결 시 환불 가능함.
 - ▶ 공과대학: 특별회계 종료 후 잔액을 참여자에게 환불하는 경우, 해당 잔액을 참여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N분의 1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.
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참여자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이 맞으며, 원칙적으로 학생회비 귀속이 우선이나 환불 진행 시 의결기구 의결을 거쳐야 함을 답변함.
- ▶ 공과대학: 전년도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정운용세칙 개정 시 비교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,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개정된 제11조는 비교란에 비교견적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취지이며,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 증빙으로 타 업체 비교견적이 필요하므로 비교견적서는 작성되어야 함을 답변함.

II. 논의 안건

■ 감사운영위원회 업무 분장

- 감사운영세칙 제22조에 따라 총학생회 감사는 위원장, 동아리연합회 감사는 부위원장 주관으로 진행함.
- 또한 세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1인당 하나의 단위 및 해당 단위 소속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다만 해당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경우 특정 구성원에게 감사 대상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따라 업무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각 구성원에게 단과대학 1개 및 학과 5개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자 제안함.
 - ▶ 공과대학: 간호대학과 간호학과가 각각 별개의 감사 단위로 구분되는지, 또는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
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맞음. 간호대학 내 단과대학과 학과로 구분되어 편성되나 동일 학생회에서 운영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보아도 무방함을 답변함.

■ 감사운영세칙 제22(업무 분장) 의결

- 구성원 1인당 단과대학 1개 및 학과 5개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 의결 진행함.
- 찬성 3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징계 관련 사항

- 금년도 동계방학 정기감사에 한하여 자금 유용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를 '주의'로 통일하고자 제안함.
- 사유로는 첫째, 예·결산안을 모두 포함한 정기감사는 최초 시행인 점, 둘째, 동계방학 중 감사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함.
- 다만 이번에 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, 동계방학 정기감사와 1학기 정기감사 간 징계 수위 차이로 인한 추후 이의제기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드립니다.
 - ▶ 공과대학: 동계방학 정기감사에 한하여 징계를 '주위'로 통일하는 것에 동의하며, 이후 징계 수위에 대한 별도 안내를 진행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 - ▶ 디자인예술대학: 징계를 '주의'로 통일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견 제시함.
 - ▶ 간호대학: 징계를 징계를 '주의'로 통일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견 제시함.

- ▶ 태권도·체육대학: 징계를 '주의'로 통일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간호대학: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이후, 동계방학 회계연도 종료 14일 이후에 결제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항이 감사 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해당 사안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'주의'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함.
- ▶ 공과대학: 특별회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좌가 아닌 학생회비 계좌로 참여비를 수납한 경우, 해당 사항이 감사 시 문제로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학생회비 계좌에서 특별회계 계좌로 이관된 경우라면 절차상 미비로 보아 '주의'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답변함.

■ 감사운영세칙 제32조(징계의 종류) 의결

- 제32조와 관련된 징계의 종류 대부분을 금년도 동계방학 정기감사에 한하여 '주의'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결 진행함.
- 찬성 3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교차 검증 일정

- 3. 14. (토)부터 3. 20. (금)까지 1차 감사 진행 후, 3. 21. (토) 12:00까지 시정 요구 안내 예정임.
- 1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교차 검증 필요성에 따라 일정 논의 진행함.
- 교차 검증 가능 일자는 3. 18. (수) 및 3. 20. (금)으로 검토됨.
- 3. 18. (수)의 경우 일부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, 우선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검토 후 추가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함을 설명함.
- ▶ 공과대학: 3. 20. (금)의 경우 MT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을 전달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3. 18. (수) 교차 검증 진행으로 결정하며, 교차 검증 위원은 당일 별도 안내 예정임을 답변함.

■ 심의·의결 관련

-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은 예산안 편성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함.
- 다만 동계방학 기간 동안 예산안 편성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.

- 이에 따라 방학 기간 중 의결기구 개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드립니다.
- 또한 학과의 경우 의결기구가 명확하지 않을 시 총회, 학과운영위원회 또는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안내한 바 있음.
- 추가적으로 예산안 심의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예산안 작성 후 집행 이후에 심의를 받은 사례에 대한 처리 기준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드립니다.
 - ▶ 보건대학: 향후 단과대학 예산안 심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.
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제도 변경이 아닌, 방학 기간 중 의결기구 개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사안임을 답변함.
 - ▶ 감사운영부위원장: 동계방학 기간 동안 예외를 인정하고, 이후 재정운용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.
- ▶ 공과대학: 동계방학 예·결산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, 결산안 작성 전이라도 사후 심의를 진행하였다면 '주의'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사후 인지 후 문의 및 시정 노력이 있었을 경우 '주의', 별도 조치 없이 결산까지 진행된 경우 '경고' 적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간호대학: 예산안 사전 작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'주의', 확인되지 않을 경우 '경고'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예산안 파일 최종 저장 일자, 집행 일자, 의결 시점 등 3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방안 제시함.
- ▶ 간호대학: 해당 기준 적용에 동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차주 총학생회비 재원을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심의 심의 건과 관련하여 동일 기준 적용 시 문제 여부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드립니다.
- ▶ 공과대학: 문제없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
■ 재정운용세칙 제11조(예산안의 편성) 의결

- 제11조 제5항과 관련하여 금년도 동계방학 예산안에 한하여 의결기구에서 의결을 받은 경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 진행함.
- 또한 차주 총학생회비 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함.

- 찬성 3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감사설명회

- 감사운영세칙 제11조에 따라 감사설명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보궐선거 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함.
- 금년도 보궐선거는 3. 30. (월) 종료 예정이며,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4. 3. (금) 개최 예정임.
- 이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인 4. 9. (목) 감사설명회 개최 예정이며, 일정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드립니다.
 - ▶ 공과대학: 일정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 - ▶ 디자인예술대학: 매주 목요일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일정이 있음을 전달함.
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해당 사항 참고하겠음을 답변함.
 - ▶ 간호대학: 감사설명회 참석이 필수인지에 대하여 질의함.
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필수는 아니나 학생회장단 및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참여를 권장함을 답변함.

III. 기타 안건

■ 시정요구 관련

- ▶ 간호대학: 보궐선거로 인해 위원장단이 사퇴한 상황에서 감사 기간 중 시정 요구 시 서명 주체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임시 위원장단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함.
- ▶ 간호대학: 임시 위원장 서명으로 갈음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필요시 임시 위원장 서명으로 갈음 가능함을 답변함.

■ 계좌 관련

- ▶ 간호대학: 위원장단 사퇴로 인하여 통장 관리가 불가하여 임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이월금을 이관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해당 이관 내역에 대하여 거래내역서, 송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추후 제출할 것을 요청 드림.

IV. 폐회 (19:40)